

당신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지금, [생명안전 기본법이] 필요한 때



당신과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법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당신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지금,
[**생명안전**
기본법]이
필요한 때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때

CONTENTS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안하며	06	Q10 왜 '기본법'으로 제정을 하려는 것인가요?	36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걸어온 길	09	Q11 재난과 안전사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0
Q1 생명안전기본법은 무엇인가요?	12	Q12 안전사고의 범위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결국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42
Q2 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하나요?	14	Q13 생명안전기본법이 '기본법'이라면 이 법안의 내용 중에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내용도 있나요?	44
Q3 사고의 책임을 왜 국가가 져야 하나요?	16	Q14 추모와 기억을 별도로 법에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46
Q4 왜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하나요?	18	Q15 산재는 별도의 법률로 예방과 대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 산재를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50
Q5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	Q16 생명안전기본법에 처벌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4
Q6 독립적 조사기구는 왜 필요한가요?	24	Q17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56
Q7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할 권리는 왜 중요한가요?	28		
Q8 안전영향 평가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30		
Q9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34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안하며



안녕하세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족 협의회 2학년 9반 진윤희엄마 김순길입니다.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침몰,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로 또다시 소중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예방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향한 국가의 대응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차벽과 폴리스라인에 가두었으며,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살포하는 살인적인 행위들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피해자들은 혐오와 모독의 대상이 되어 마땅히 진실을 요구하고 모여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주체들이 그저 운 나쁘게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불쌍한 사람만으로 치부되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 합니다.

재난을 겪은 사회의 그 이후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싸워서 이루어낸 것들과 요구해온 것들을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 기구가 내어놓은 재난방지 권고안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책임자가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됩니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우리가 겪은 참사를 다른 누군가가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적 조사기구를 상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모든 국가 정책시행에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하는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삶터에서 안전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이 일상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마음껏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사회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싶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걸어온 길

-
- The timeline diagram illustrates the progression of events in the campaign for the Basic Law of Life Safety. It features a vertical line with circular markers at each event point, connected by horizontal lines to the corresponding date and description.
- 2016년 6월~2017년 2월: 안전패러다임의 전환 등 논의, 생명안전기본법 개요안 마련 (생명안전 시민넷 창립 준비위)
 - 2017년 4월 13일: 19대 대선, 법제정을 시민사회 생명안전 의제로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제안
 - 2018년 8월 1일: 생명안전기본법안(버전1) 완성 (생명안전법률위원회)
 - 2019년 3월 12일: 행안부, 안전기본법 제정 발표 (청와대 업무 보고)
 - 2019년 11월 7일: '생명안전기본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 보장 법제화를 위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2020년 8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 2차 버전 완성
 - 2020년 11월 11일: 정부의 안전기본법 발의 (정부안, 오영환 의원 대표 발의)
 - 2020년 11월 12일: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시민사회안, 국회 생명안전포럼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
 - 2021년 2년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수석전문위원의 안전기본법 및 생명안전기본법 검토보고하고 소위로 회부함

- 2023년 5월 31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시민사회와 참사 피해자 연대 기구, 약칭 '생명안전 동행')
발족 기자회견, 생명안전권리 선언문 발표
- 2023년 8월 29일~9월 28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5만 국민동의청원 캠페인 및 5만 달성
- 2023년 9월 7일 ● '국회는 생명안전 과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참사 피해자들과 생명안전 현안 연대기구들,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주최 국회 기자회견
(국회 의사당 계단) - 생명안전 후퇴 저지 및 중대
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요구
- 2024년 3월 25일 ● 22대 총선 생명안전 약속 운동 기자회견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 이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3대 정책과제 약속 운동)
- 2024년 9월 20일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국회 생명안전포럼, 참사 피해가족들, 생명안전 동행)
- 2024년 9월 30일 ● 사회적참사특별위 권고안 이행 촉구 및 생명안
전기본법 제정 국회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가족들,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 동행)



Q1

생명안전기본법은 무엇인가요?



A ✓
생명안전기본법은
무엇인가요?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생명·안전·존엄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고의 원인과 대응의 문제점을 조사·개선하여
유사 문제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생명안전기본법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등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2016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24년 현재에도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Q2

WHY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하나요?



A ✓
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하나요?

너무 많은 재난과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고,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로 **1,82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망사고 등 대형재난도 계속 발생합니다.

일터에서도 **하루 6명**이 산재와 직업병으로 죽어갑니다.

이런 참사가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안전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참사는 운 나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Q3

사고의 책임을 왜 국가가 져야 하나요?



A ✓
사고의 책임을
왜 국가가 져야 하나요?

생명안전기본법은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사망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희생되게 되었는가?’입니다.

정부가 모든 죽음에 무한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한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죽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의 책임과 반성의 토대 위에
사회와 정부 시스템이 개선되도록 해야 합니다.

Q4

Q4 왜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하나요?



A ✓
왜 '안전권'이
보장되어야 하나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과 신체가 함부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권'은 다른 기본권의 전제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이 권리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규정하며(헌법 제35조),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헌법 제34조 6항).

그러나 '안전권'을 명확하게 원칙으로 명시해야
그에 따라 정부의 책임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사고는 드물게 겪는 개인적인 불운이 아닙니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후위기 등 위험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피해자 권리와 지원 내용** 등을
법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그것이 작동되도록 했습니다

A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의 권리인 ‘안전권’을 침해당한 이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들이 정부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억압하거나,
피해자들이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 반정부세력으로 취급하여
외면하거나 탄압했습니다.

그럴 경우 일부 시민들은 안전사고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를 혐오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법에 명확하게 해두고자 합니다.



Q6

독립적 조사기구는 왜 필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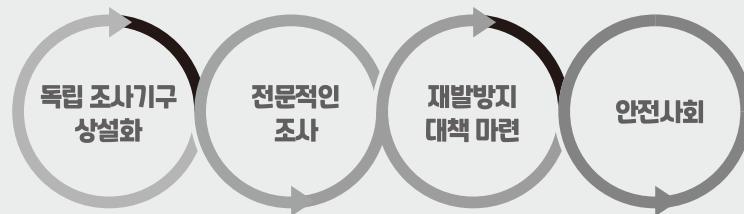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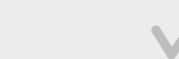
A ✓
독립적 조사기구는
왜 필요한가요?

생명안전기본법(안) 제15조에는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보고,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A 독립적 조사기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미 항공·철도사고나 해양사고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에서
사고조사를 담당합니다.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원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만이 아니라,
2017년 5월 1일 발생한 거제의 삼성중공업 크레인 층돌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0.290|태원참사도 1년간의 치열한 요구를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싸워야만 독립적인 조사가 행해지도록 할 것이 아니라,
**독립 조사기구를 상설화되어 중대재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사회로 가는 교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Q7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할 권리는 왜 중요한가요?



A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할 권리는
왜 중요한가요?

생명안전기본법(안) 제8조에는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가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위험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들도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도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해가 났을 때 위험한 지역이 어딘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위험에 대해 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8

안전영향 평가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A ✓
안전영향평가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두어(법 제20조)
국가가 각종 정책 등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신중하게 **평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의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놓은 것처럼,
이제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안전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A 안전영향평가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월호참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의정부 화재사고, 담양 펜션화재 등

잇따른 **대형사고** 이면에는 어김없이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종 정책이나 법이

규제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함부로 완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안전영향평가제도가 필요합니다.



Q9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A ✓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세월호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안전의식**이 높아진 반면
국가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참사에서조차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고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추모를 가로막는 등 과거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함께 독립조사기구의 설치를 통한 객관적인 진상규명,
그 결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국가와 기업의 책무, 시민들의 참여,
안전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예방 등을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재난안전관리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 10

왜 '기본법'으로 제정을 하려는 것인가요?



A ✓
왜 '기본법'으로 제정을
하려는 것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 등 재난에 대한 많은 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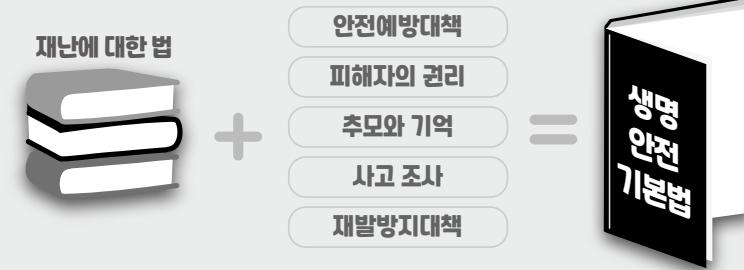
그런데 여러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이 **법들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자연재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응체계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안전예방대책, 피해자의 권리나, 추모와 기억의 의미,
사고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등 많은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안전에 대한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A 왜 '기본법'으로 제정을
하려는 것인가요?

**기본법은 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개별법보다 위에 있는
법으로서 개별법의 목표와 이념 등을 정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과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 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재난에 관한 기본법은 안전에 대해 우리사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고 기본적인 이념이 무엇인지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과 안전사고가 많아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대응의 기본적인 목표와 이념, 기본원칙을 세우고자 합니다.



Q 11.

재난과 안전사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재난과 안전사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흔히 재난과 참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명안전기본법에서는 ‘안전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중
국가나 지자체의 대처가 필요하거나 행안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말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사고**는
재난과 재해를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2호).

따라서 생명안전기본법이 적용되는 안전사고는
재난재해에 준하지만, 그보다 넓은 의미로
산업재해와 공공운송수단의 사고 등도 포함하게 됩니다.

Q 12.

안전사고의 범위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결국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A ✓

안전사고의 범위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결국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생명안전기본법은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구호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재해구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피해지원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에 필수적인 **신속한 구조, 수습, 정보전달** 등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권리**로 규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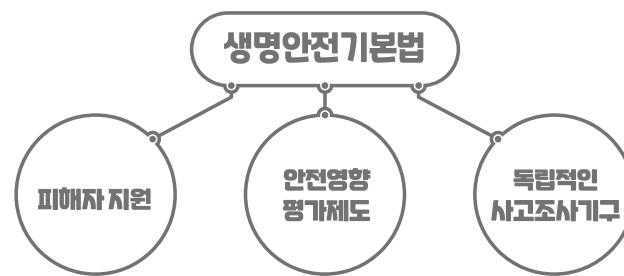
예산이 수반되는 피해 지원은 일률적으로 모든 지원을 사고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예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피해 지원의 원칙 아래 하나의 재난에 집행가능한 **예산의 상한을 규정하는 법령 제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도 줄이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예산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Q 13.

생명안전기본법이 '기본법'이라면 이 법안의 내용 중에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내용도 있나요?



A ✓ 생명안전기본법이 '기본법'이라면
이 법안의 내용 중에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내용도 있나요?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재난과 참사 대응의 기본 원칙**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의 내용 중에서 별도 법안이 필요한 내용은
피해자 지원, 안전영향평가제도,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입니다.

피해자지원은 별도 법률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 지원의 구체 내용과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전영향평가제도도 **평가대상과 평가절차, 평가를 위한 체계** 등의 내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 사고조사기구의 경우에도 **조사기구의 구성 대상과 방식, 조사의 핵심 내용** 등 별도로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한 법률가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이 법안에 기반하여 개별 법률도 준비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Q 14.

추모와 기억을 별도로 법에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추모와 기억을 별도로 법에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는 지역사회의 분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태안 기름유출 사고, 포항 지진, 구미 불산누출 사고 등
재난과 사고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재난지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심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고자 하는 이들과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이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 및 각종 갈등의 조정을 위한 시책을**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추모와 기억을 별도로 법에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추모공원이나 조형물 등 기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해 잊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함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재난참사의 기록은 그 자체로 안전사고를 막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자료이기도 합니다.
재난과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의 발생과 원인, 수습과정,
재발방지대책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이 과정에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런던 하이드파크



뉴욕 그라운드 제로



멕시코 차풀페тек 메모리얼 파크

Q 15.

산재는 별도의 법률로
예방과 대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
산재를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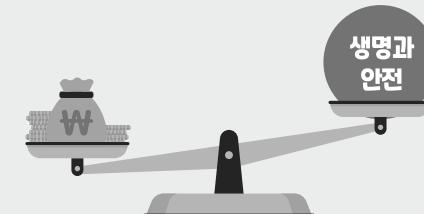
A

산재는 별도의 법률로 예방과 대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 산재를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안전권을 권리로 명명하고 국가와 지자체, 개인과 단체가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조항 자체로 산재를 예방하거나 산재발생 시 책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이 제정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비용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산재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권리로 인정하고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면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달라져
산재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A 산재는 별도의 법률로 예방과 대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 산재를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또한 산재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위험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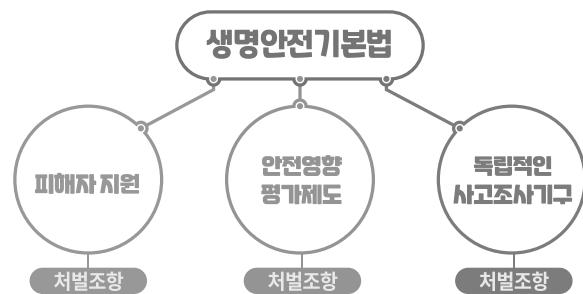
사업장의 환경 관련 정보의 공개, 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의 공개 등은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또한 독립적인 조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재의 은폐를 막고 산재의 예방과 산재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중심에 두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16.

생명안전기본법에 처벌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생명안전기본법에 처벌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명안전기본법에 담겨있는 조항들을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지키도록 하려면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안전기본법은 말 그대로 우리사회가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와 시스템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법의 특성상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까지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다.

향후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나면 개별법들이 기본법에 맞춰 제개정되어야 하는데, 그 때 제개정되는 개별법에 처벌조항도 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Q17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A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이어도 좋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생명안전동행과의 간담회를 신청해주세요.

생명안전기본법과 진행경과 등이 궁금하실 때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이 높아져야
사고의 예방과 대응, 수습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하기

4.16연대 02-2285-0416 / 416network@416act.net

4.16재단 031-405-0416 / 416foundation@gmail.com

생명안전 시민넷 070-4705-7073 / safetyrights@kakao.com

당신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때**

발행일 | 2024년 10월

발행처 |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당신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지금,
[**생명안전
기본법이**]
필요한 때



당신과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법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후원하기**

카카오뱅크 79798138195 김선우